연구교수 임용 규정

<제정 2002.05.01.>, <5차 개정 2022.05.04.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연구교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제 2 조 (연구교수의 정의) 연구교수라 함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에 소속하는 자로서 총장이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2.05.04>

[제목개정 2022.05.04.]

제 3 조 (자격) 연구교수는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제 4 조 (임용) 연구교수는 연구기관장 또는 사업단장의 추천과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19., 2022.05.04>

제 5 조 (소속 및 복무) ① 연구교수의 소속은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으로 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② 연구교수는 소속 연구기관장 또는 사업단장의 지휘에 따라 소정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연구활동을 보조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제 6 조 (처우) ① 연구교수의 처우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② 연구교수는 소속 연구기관장 또는 사업단장의 요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관 및 실험실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5.04.>

제 7 조 (재원) 연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및 제 경비는 외부 기관 · 단체 · 개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제 8 조 (면직) 연구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연구기관장 또는 사업단장은 총장에게 즉시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5.04.>

1. 연구교수의 재원이 되는 연구계약의 해약이나 기간의 종료 등으로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<개정 2022.05.04.>
2. 연구교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연구기관장 또는 사업단장과 상호 협의로 계약의 조기종료를 결정한 때 <개정 2022.05.04.>
3. 기타 계약에 정한 해임요건이 발생한 때

제 9 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08.09.10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2.10.19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2.05.04]